

부산지방법원 2022. 12. 23 선고 2022나4832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2. 12. 23 선고 2022나48325 판결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3. 30 선고 2020가단848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훈

변론종결 2022. 11. 18.

판결선고 2022. 12. 23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3. 30. 선고 2020가단848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2,27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
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
인용한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C과 공모하여 C 소유의 D 토지와 건물, E 토지를 피고 명의로 은닉하는 불법행위를
저질렀으므로,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
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
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윤태식, 판사 황지현, 판사 박승휘